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15150
----------	-------

제출연월일 : 2025. 12. 11.
제출자 : 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따라 장래에 발생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자동차 구동축전지 등의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폐기물의 회수·보관·재활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운영 주체에 지방자치단체의장을 추가하고, 취급 대상 폐기물에 건설기계 등에 탑재된 구동축전지 등을 추가하여 그 업무 수행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래폐자원 재활용 촉진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로 한다.

제19조제1호 중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폐기물”로 한다.

제20조의4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폐배터리등”을 각각 “미래폐자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거점수거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제1항에 따라 거점수거센터를 설치 ·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설치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로 한다.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 · 재생에너지의 보급 · 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따라 장래에 발생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이하 “미래폐

자원”이라 한다)을 회수·보관·재활용하기 위하여 미래폐자원 거점 수거센터(이하 이 조에서 “거점수거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5호·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또는 수소 전기자동차에 탑재된 구동축전지 및 연료전지로서 폐기물로 된 것
2.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또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에 탑재된 구동축전지로서 폐기물로 된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동축전지 또는 연료전지에 연결되어 있는 부품·장치로서 폐기물로 된 것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4. 태양광 패널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의 핵심 부품으로서 폐기물로 된 것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제2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5(전문인력의 양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래폐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 양성체제의 구축·운영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시책에 포

함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3. “폐전기 · 폐전자제품”이란 전기 · 전자제품이 <u>「폐기물관리법」</u>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로 된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 · 2. (현행과 같음) 3. ----- ----- <u>「폐기물관리법」</u>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 -----.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제19조(전기 · 전자제품의 재활용 부과금 등의 용도) 전기 · 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 · 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u>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활용 · 회수를 위한 사업이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지원</u>	제19조(전기 · 전자제품의 재활용 부과금 등의 용도) ----- ----- ----- -----.
2. ~ 6. (생 략)	1. <u>폐기물</u> ----- ----- ----- ----- -----
제20조의4(미래폐자원 거점수거 센터의 설치 · 운영) ①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및 2</u>	제20조의4(미래폐자원 거점수거 센터의 설치 · 운영) ①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 · 재생에너지의 보</u>

차 전지가 포함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하 이 조에서 “폐배터리등”이라 한다)의 회수·보관·재활용을 위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이하 이 조에서 “거점수거센터”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급·화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따라 장래에 발생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이하 “미래폐자원”이라 한다)을 회수·보관·재활용하기 위하여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이하 이 조에서 “거점수거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5호·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에 탑재된 구동축전지 및 연료전지로서 폐기물로 된 것

2.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또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에 탑재된 구동축전지로서 폐기물로 된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동축전지 또는 연료전지에 연결되어 있는 부품·장치로서 폐

	<p><u>기물로 된 것 중 기후에너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u></p> <p><u>4. 태양광 패널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의 핵심 부품으로서 폐기물로 된 것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u></p>
②	<p>거점수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폐배터리등의 회수·보관·재활용에 관한 업무</u> 2. <u>폐배터리등의 성능평가 및 매각에 관한 업무</u> 3. <u>폐배터리등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통계조사 및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u>
③	<p>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거점수거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④	<p>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점수거센터의</p>
②	<p>----- -----.</p>
1.	<p><u>미래폐자원</u>----- -----</p>
2.	<p><u>미래폐자원</u>----- -----</p>
3.	<p><u>미래폐자원</u>----- ----- -----</p>
③	<p>----- <u>제1항에 따라 거점수거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설치 및 운영</u>----- ---.</p>
④	<p>----- -----</p>

설치 ·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

제20조의5(전문인력의 양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래폐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 양성체제의 구축 · 운영을 위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시책에 포함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의 결과

- (일부개정) 개정안에 따라 기후부장관과 지자체의 장이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신규 설치 및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총 165억원 (연평균 33억원)으로 추계됨
-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경우 '21년부터 전국 6개소 설치·운영이 계속 진행중에 있어 개정안에 따른 추가소요는 산정하지 않았으며, 신규 1개소 설치사업('26~'29, '26년도 신규사업)에 따른 재정소요만 추계
 -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경우 개정안에 따라 기후부가 추진예정인 교육지원사업('26년도 신규사업)과 '25년부터 진행중인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재정소요 추계

(단위: 억원)

구 분	연 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지출	○ 안 제20조의4 개정 (미래폐자원 거점 수거센터 설치·운영)	20	55	48	7	-	130	26
	○ 안 제20조의5 신설 (전문인력 양성)	7	7	7	7	7	35	7
	소 계(A)	27	62	55	14	7	165	33
수입	○ 안 제20조의4 개정 (미래폐자원 거점 수거센터 설치·운영)	-	-	-	-	-	-	-
	○ 안 제20조의5 신설 (전문인력 양성)	-	-	-	-	-	-	-
	소 계(B)	-	-	-	-	-	-	-
총 비용(A-B)	27	62	55	14	7	165	33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20조의4 개정(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설치·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제1항)</u> * 기후부장관의 설치·운영규정은 현행 규정과 같음 ○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거점수거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설치·운영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제3항)</u>
2	안 제20조의5 신설(전문인력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래폐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 양성체제의 구축·운영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제1항)</u> ○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시책에 포함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2항)</u>

III.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20조의4 개정 (미래폐자원 거점수거 센터 설치·운영)	○	<p>일부 추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부와 지자체는 법률 또는 조례를 근거로 '21년부터 거점수거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설치·운영기관이 지자체로 확대되더라도 재정 지출 증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 작성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규칙 제2조제1호) * 기후부 4개소, 지자체 2개소(경북, 제주) - 지자체의 신규 설치(1건) 수요에 대해 비용추계
2	안 제20조의5 신설 (전문인력 양성)	○	<p>일부 추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양성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이며, 지자체에 대해서는 권고를 위한 규정에 해당하여 비용추계가 곤란(규칙 제3조제1항제3호) - 이에 따라 기후부가 추진중이거나 추진예정인 교육지원사업에 대해 비용추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현재 기후부 및 일부 지자체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하지는 않으나, 일부 지자체(제주)의 경우 '26년부터 별도의 거점수거센터 신축사업 추진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발생이 예상됨
 - (기후부) 동 법률에 따라 '21년부터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4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개정안에 따른 설치·운영 추가재정소요는 미발생
 - * 수도권(경기 시흥), 충청권(충남 홍성), 호남권(전북 정읍), 영남권(대구)
 - (경상북도[포항시]) 지자체 사업으로 설치한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를 거점수거센터로 활용중*('21~)에 있으며,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동반하는 사업계획은 없음
 - * 경북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기존의 전기차 배터리 산업화센터를 거점수거센터로 병행 운영중*('20~)에 있으나, 폐배터리 발생량 증가(향후 5년간 100개/년 → 1,000개/년), 산업화센터의 본래 기능 집중, 보관공간 부족문제 해소 등을 위해 거점수거센터 신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예정('26~'29)이므로, 이에 대한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 제주도 전기차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 미래폐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경우 기후부는 '26년부터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할 계획이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되며, 지자체의 경우 추진 여부와 계획 등이 부재한 상황이므로 비용추계가 곤란하여 제외
- 따라서 본 추계는 지자체(제주)가 신규 설치하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1개소의 사업비* 및 기후부가 추진 예정인 교육지원사업을 대상으로 5년간 재정소요를 추계
 - * 제주도 이외 지자체가 거점수거센터 신규 설치에 대한 수요 또는 계획은 확인된 바 없음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제주) 신축 사업비로 향후 4년간 130억원이 소요되어 이에 대한 재정소요를 추계하고, 이후 운영비는 지자체가 부담할 예정이지만 현재 센터가 운영중인 점을 감안하여 추가소요가 발생하지는 않는 것으로 함
 - (필요성) 제주지역의 전기차 폐배터리 발생량은 향후 5년간 약 8배 이상 증가* 예상되어 이를 체계적으로 회수·보관·재활용을 위한 거점수거센터 신축 필요
 - * 최근 5년('20~'24)간 556개(평균 111개/년) → 향후 5년('25~'29)간 4,699개(평균 940개/년)
 - (사업기간 / 총사업비) 2026~2029(4년간) / 130억원(국비 65억, 도비 65억)
 - (사업규모) 건축물 2개 동, 배터리 고속 평가·진단 설비(10종, 17개)
 - (사업형태) 지자체 보조사업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130	20	55	48	7	-
건축공사	30	2	21	7	-	-
장비구축	100	18	34	41	7	-

※ 2026년 신규사업 반영

○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경우 폐배터리 재활용 특성화 대학원 1개소를 지정·지원 ('25~'29)하고 있으며, '26년부터 계층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기후부)을 아래와 같이 추진할 예정에 있어 이에 대한 소요예산을 추계함

- ① 특성화 대학원 : 2025~2029(5년간, 1개소 지정), 연간 5억원 지원
 - * 현재 지원중인 대학원 사업기간 종료직 후 1개소를 신규 지정하여 계속 지원 예정
- ② 교육지원사업 : 2026~계속, 연간 2억원
 - * 대학현장형 인턴십, 재직자배터리 업-스킬링 코스, 연구산학연 공동 트레이닝, 협회국제교류형 연수 등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35	7	7	7	7	7
특성화 대학원	25	5	5	5	5	5
교육지원사업	10	2	2	2	2	2

※ 특성화 대학원은 2025년 신규사업 반영, 교육프로그램은 2026년 신규사업 반영하여 추진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2026년도 예산 국회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주도에 신규 설치예정인 미래 폐자원 거점수거센터 1개소 사업비 및 기후부가 추진예정인 교육지원사업 소요예산을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신규 설치 소요 발생 및 지자체 교육지원사업 추진 등이 발생하는 경우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주무관	사무관	과장	국장
-	남궁현	심은수	김고옹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궁현	044-201-7384	namkung6@korea.kr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원조달방안

I. 항목별 재원조달방안

- 개정안에 따른 향후 5년간 소요재정은 총 165억으로 회계·기금으로 확보 예정

〈항목별 재원조달방안〉

(단위: 억원)

구 분	연 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 조세수입·세외수입 또는 국채발행·차입							
○ 회계·기금 간 전입	27	62	55	14	7	165	
○ 기존 예산·기금의 항목 간 조정							
○ 기타							
〈합 계〉	27	62	55	14	7	165	

II. 부문별 재원조달방안

- 중앙정부의 경우 환경개선특별회계 및 기후대응기금으로 100억원을 확보하고, 지자체의 경우 일반회계로 65억원 확보 예정

〈부문별 재원조달방안〉

(단위: 억원)

구 분	연 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 중앙정부	17	34.5	31	10.5	7	100	
○ 환경개선특별회계	15	32.5	29	8.5	5	90	
○ 기후대응기금	2	2	2	2	2	10	
□ 지방자치단체	10	27.5	24	3.5	-	65	
○ 일반회계	10	27.5	24	3.5	-	65	
〈 합 계 〉	27	62	55	14	7	165	

III.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1. 중앙정부의 항목별 재원조달 방안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환경개선특별회계 및 기후대응기금으로 각각 확보 예정
 - (환경개선특별회계) 지자체의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설치사업(1개소)에 대한 지원 ('26~'29, 65억원*)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중 특성화 대학원 지원사업('26~'30, 25억원)
* 국비 보조 50%(총 130억원 중 65억원)
 - (기후대응기금) 미래폐자원 재활용 촉진 관련 교육지원사업('26~'30, 10억원)
- '26년도 예산 확정액을 반영하여 재정소요를 각각 추계함

2. 지방자치단체의 항목별 재원조달 방안

- 지방자치단체(제주)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신축사업 예산을 일반회계로 확보 예정 ('26~'29, 65억원)
 - 사업비 국비 보조 : 50%(총 130억원 중 65억원)

3. 기타 재원조달 방안

- 해당사항 없음

IV. 부대의견

- 해당사항 없음

V. 협의사항

협의시점	협의기관	주요 협의내용 및 협의결과
'25년	기획재정부, 지방자치단체	- '26년도 신규사업 예산안 심의·편성 - 지자체의 경우 사업비 보조 비율(50%) 협의완료

VI. 작성자

- 성명

주무관	사무관	과장	국장
-	남궁현	심은수	김고응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궁현	044-201-7384	namkung6@korea.kr